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경영진단 4,400건, 교육·사업화 지원 1,50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경영진단	교육사업화 지원
합 계		4,400	1,500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06	104
	나이스평가정보(주)	305	104
	한국표준협회	306	104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226	77
	에스케이플래닛(주)	454	155
	오렌지나무시스템(주)	452	154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230	79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35	46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37	47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131	44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179	61
광주·전남·제주	(주)세종경영연구소	348	119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57	54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412	140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268	91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275	94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79	27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 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 방안을 제공
 -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심화교육(7H 내외)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①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②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③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④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

-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서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협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p style="text-align: center;">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p>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p> <p>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p>

○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p>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p> <p>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p>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p> <p>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p> <p>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p>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p>
<p>*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지원조건 확인 서류(선택 1)

제출서류	제출요령	
①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②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① <u>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u>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처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 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미소짓는 데이터생활- 소비자보호- 무료 신용조회	
③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④ 고용위기지역 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⑥ 특별재난지역	③~⑤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24.2.27.)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 (예) ③고용위기지역('23.1.1.~'24.6.30.): 경남 거제시 - 지정기간('23.1.1.~'24.6.30.)내에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⑥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 하여 공고일('24.2.27.)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 (예) ⑥특별재난지역('23.8.14, 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8.14.) 이전부터 대구 군위군 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발급처: 홈택스(사업장소재지 변경사실 유무에 따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⑦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감소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4 선정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나이스평가정보(주)	1577-1852
	한국표준협회	1533-5731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1-344-7775
	에스케이플래닛(주)	031-620-1240
	오렌지나무시스템(주)	1577-2910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2-229-7776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33-256-3520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533-5731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62~5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041-424-4000
광주·전남·제주	(주)세종경영연구소	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3,1305, 1310,1312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26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10, 6718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533-5731

- 붙임 1. 자기역량기술서 양식
 2.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3.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붙임 1]

자기역량기술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붙임 2]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경영개선 사업화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매장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1-1. 사업화자금 신청

(단위: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50%)	자기부담금(50%)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50% 이내) + 자기부담금(50% 이상)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5일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사업화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해야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층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 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① 구매(생산)계획	
<p>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p>	
② 판매계획	
<p>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p>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장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 확보와 고객 유지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 조성 계획	
<p>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 효과	
<p>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 창출 등 향후 계획</p>	

4. 사업비 집행계획

* 경영개선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4천만원 기준 최대 13백만원)
-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인정합니다.

경영개선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안) >

* 상세내용은 업무편람 참고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협약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갱신비용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사업화지원 대상자 본인(법인이 경우 법인 명의)일 것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接客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이 불가 -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결과물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시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용역으로 제작(자체제작인 경우 제품개선항목 사용불가) - 제작된 시제품은 사업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험제품으로써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불가하며, 1년 간 별도 유지·관리 필요 - 교육훈련비 지원불가(경영개선 심화교육 활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온·오프라인 광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이벤트 비용 등 - 홍보물(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현수막 등) 제작비용 등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업체명, BI, CI, 로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박람회 등 행사참여시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정부 지원금 항목으로 지출 불가하며 자기부담금(현금)으로 가능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 협약기간 내 발생 및 정산된 온라인 입점수수료, 상품판매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및 배너광고 등 - 쇼핑몰 입점 계약서 및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첨부 필수 -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비 등) 지원불가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6만원* 이내 * 최저임금 9,86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휴8H) - 협약기간 내(협약시작일~협약종료일) 정산된 인건비에 한함 - 직원인건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필수제출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발생한 사업장 월세에 한하여 인정 - 지원불가: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본인소유의 건물 임차비 -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불가 - 특수관계자 소유의 경우 추가증빙(임대인-임차인 간 최근 6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임대인의 세금신고 내역(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수 제출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협약기간 내 구매 및 설치완료된 제품에 한하며 검수 완료보고서 필수 - 지원불가: 단순 이동수단(차량 등) 및 중고물품, 관세, 배송비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시설·설비·장비 구입비용 지원불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자부담 현금 및 현물비율 준수)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와는 거래할 수 없음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허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전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특수관계자 >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 가. 8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나.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 나. 사업화대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라. 사업화대상자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자 있는 자
 -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바.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사.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아.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상시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

구분	증빙자료	구비요건
공통서류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
	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물품구매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필수
카드결제시	카드 사용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상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기재) • 원칙적으로 할부거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할부거래 시 협약기간 내 완납되어야 함
계좌이체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대표자명 확인(예금주와 동일)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지출 관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 및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금지업종 사용 내역 확인필수(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

집행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진행과 무관한 집행을 한 경우(개인적인 목적, 해당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 • 허위영수증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입금증, 허위 정산서류 등 • 간이영수증 및 종이세금계산서 :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불인정) • 법·지침에 따른 적격·법적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예산범위 및 법·지침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 상위기관에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기간 외(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내역 • 본인 날인 완료한 이행전략보고서와 상이한 집행 건 • 해당하는 사업자명으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중복지급, 개인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취소 수수료 사용 •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 •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타 지원사업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중복된 증빙자료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료 등) • 환급이나 공제 받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환수기준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전액환수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 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액환수
	고의적으로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전액환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전액환수

※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여부 및 수위등을 결정할 수 있음